

■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안내

구분	기간	장소
당첨자 서류검수	2022.09.13(화) ~ 2022.09.19(월) 10:00 ~ 16:00	사업주체 건본주택 -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
정당계약	2022.09.20(화) ~ 2022.09.22(목) 10:00 ~ 16:00	

■ 제출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 유의사항
공통 서류 (추첨제)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- 본인 발급분에 한함(대리발급분은 불가)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'상세'로 발급
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※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민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.
추가서류 (가점제 및 해당자)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존속	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포함)
		직계비속	-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포함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배우자	-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-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자녀	-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 전원	-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(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) ※ 직계존속 : 입주민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직계비속 (30세 미만) : 입주민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(30세 이상 : 입주민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 - 공금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(단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)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표시 ※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민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.
	해외체류[단신부임] 입증서류	본인	-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청약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대리인 신청	위임장	청약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접수 장소에 비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
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(22.08.18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